행정심판 제도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이익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

행정심판위원회

- 국민이 제기한 행정심판 사건을 심리하여 처분의 위법 · 부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

- 설치 및 관할

구 분	관 할	설 치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중앙부처 및 그 소속기관 · 17개 시도, 공공기관 등	국민권익위원회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 기초자치단체 · 소속 및 산하기관	각 시도
시도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 교육지원청 및 학교 · 소속 및 산하기관	각 시도 교육청
지방교정청 행정심판위원회	· 교도소 및 구치소	지방교정청
고등검찰청 행정심판위원회	· 지방검찰청 및 지청	고등검찰청

※ 자세한 사항은 행정심판법 제4조 및 제6조 참조

행정심판 장점

- 행정소송에 비해 **신속·간편**하게 진행
- **단심제**이며, 비용은 **무료**
-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성**까지 판단
- 처분청은 행정심판위원회의
- 결정에 따라야 하는 **기속력 발생**

※ 국선대리인, 조정 제도를 통한 권리구제 강화('18년 부터)

행정심판 진행 절차



온라인 행정심판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청구부터 재결서 송달까지 원스톱으로 신속·편리하게 행정심판 절차를 진행 할 수 있는 서비스

온라인 행정심판 장점

- 모든 행정심판 절차를 PC·모바일을 통해 진행
- 방문·우편에 비해 신속·편리한 심판 청구 가능
- 심판 진행상황 및 결과를 언제 어디서나 확인

※ 등기 송달/수령에 따른 불편함이 없습니다

온라인 행정심판 (http://www.simpan.go.kr)

www.simpan.go.kr

따뜻한 행정심판으로
새롭게 도약하겠습니다.

신속·공정한 권리구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
조정제도
간접강제제도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선대리인 제도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청구인에게 행정심판위원회가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약자의 실질적 권익구제를 강화하는 제도

신청
국선대리인 지원요건 해당자로서 국선대리인의 조력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 위원회 심리기일 전까지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와 지원요건 해당자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

선정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국선대리인 신청서 및 소명서류 등을 검토하여 국선대리인을 선임하기로 결정하면, 국선대리인을 지정하여 그 선정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활동
지정된 국선대리인이 신청인(행정심판 청구인)을 대신하여 심판청구 사건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시까지 대리활동을 수행

신청방법 안내

- 온라인 행정심판 (www.simpan.go.kr)
- 방문·우편 :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세종), 서울종합민원사무소

●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 및 제출 서류

신청 대상	소명 서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증명서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지자체 발행 장애인연금 지급 통지서 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통일부장관 발행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그 밖에 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	그 밖에 종합소득금액, 소유재산가액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을 소명하는 증빙서류

조정 제도

행정심판 청구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해 당사자의 권리 및 권한 범위에서 동의를 받아 조정을 진행

조정 대상

-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의 변경
- 징계처분의 감경
- 행정상 강제집행의 연기
- 거부처분·부작위에 대해 원래 신청된 내용보다 축소된 처분으로 변경 등

조정 절차

조정 개시(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으로 개시) → 당사자 간 합의사항 도출 후 **합의서 작성**(당사자 서명 또는 날인) → **조정서 작성** → 행정심판위원회 **상정·확인** → **조정 성립**

조정 효력

성립된 조정은 행정심판 재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어 처분청은 조정 내용에 따라 청구인에게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의무 부담

조정 사례

석유판매업 사업정지처분 행정심판 조정 사례

▸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주)(석유판매회사)와 대표이사 A씨를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하였는데, 이후 A씨는 해당 사실을 모르는 B씨에게 ○○(주)를 양도하였고, 피청구인은 ○○(주)에 3개월의 사업정지처분을 하였음
※ 회사 인수 약 한 달만에 사업정지 처분을 받은 B씨는 행정심판을 청구

▸ 위원회 조정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의 사정을 감안하여 양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당초 3개월의 사업정지처분을 2개월로 감경토록 조정 결정함

▸ 재처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따라 피청구인은 기존의 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감경된 처분을 다시 하였음

간접강제 제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 재결에도 처분청이 미이행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의 간접강제 신청에 따라 처분의 이행시까지 처분청에 일정한 배상을 명할 수 있음

간접강제 절차

1. 처분의무 불이행 (행정청) — 상당한 기간 내 재결취지에 따른 처분 불이행
2. 행정심판 재결 (행심위) — (적용대상) 의무이행 명령재결, 거부처분 취소재결, 무효 · 부존재 확인재결
3. 간접강제 신청 (청구인) — 서면 또는 온라인 가능 신청서에 피신청인의 이행의무, 이행기간 및 배상금 명시
4. 심리·결정 (행심위) — 위원회는 7일 이상 15일 이내 기간을 정해 신청 상대방 의견 청취
5. 불 복 — 청구인은 간접강제 기각, 각하결정에 행심위를 피고로 행정소송 제기가능

간접강제 결정 사례

도로시설 등 인수 이행청구 간접강제

▸ 사건개요
OO시는 아라뱃길 사업으로 신청인이 건설한 쓰레기수송로 등을 인수하라는 재결을 받고도, □□시 및 △△시에 인수절차에 협조하여 달라며 쓰레기수송로 등을 인수하지 않음

▸ 결정
OO시에게 60일의 말미를 주고, 그 기간 안에 쓰레기수송로 등을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OO시가 신청인에게 위 60일의 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그 인수 완료일까지 1일 금 20만원씩을 지급하도록 결정함

▸ 시사점
OO시에게 공공시설 인수 이행을 간접강제함으로써, 사업 관리 · 운영의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함